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6. 11
문교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6월 2일

○ 회부일자 : 1993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 90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 6.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청 관리국장 신 재 철)

가. 제 안 이 유

현재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실업계고교 교육내실화 계획에 의거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이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제명을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로 개정함.
- 공업계 공동실습소를 청주기계공고内に 설치함.
- 공동실습소 직원은 해당학교 교직원이 겸임하도록 함.
- 하부조직으로 연수과와 서무과를 두고 그 사무분장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내실화 계획에 의하여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현재 설치 운영中인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를 전면개정하여 농업계와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題名를 실업계고등학교로 개정하는등 내용과 운영방법 등은 기존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에 준한 것으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에 대한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가추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없 음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 원 안 가 결 "

7. 소수 의견 요지 : " 없 음 "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 조례안